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93

제출년월일 : 2012. 3.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운용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비율을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
(안 제6조제4항제1호)

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
(안제6조제4항제3호)

다. 2012. 9. 1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인하 (월15,000원 ⇒ 10,000원)
(안제5조의2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의2

나.「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2012. 2. 6 ~ 2. 28 (의견없음)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5호 중 "영" 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만5천원"을 "1만원"으로 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같으며 적용대상 주차장 및 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다.「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을 각각 "전통시장"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3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과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또는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 ---------- ---------- ----------.
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당해 지역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 ---------- ---------- ----------.

현 행	개 정 안
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만5천원**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18:00~24:00까지로 한다. **다만, 점포앞 전용구획에 3시간 이하 사용자는 월 1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 ---------- **1만원**---------- ----------.
제6조(주차요금등) ① ~ ③ (생략)	**제6조(주차요금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경감 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적용대상 주차장 및 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④ ---------- ---------- **같다**. ----------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7급 까지의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의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 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 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현 행	개 정 안
	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다.「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2.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 테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4. ~ 6. (생략)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전통시장** ---------- ---------- ----------.
7.「**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관 련 법 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로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 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자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3. 시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3의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93)

1. 의 안 명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2. 3. 6.(수)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12. 3. 12.(월)
라. 위원회 심사 : 2011. 3. 19.(월)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운용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비율을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안 제6조제4항제1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안 제6조제4항제1호)
❍ 거주자 우선주차 월주차요금 인하 : 월 15,000원 ⇒ 월10,000원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조문 정비

4.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의2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5. 검토의견 (전문위원 손중익)

❍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비율을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 거주자우선주차제 월주차 요금을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사항으로 원안의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